

양돈협회 캠페인

해양배출 감축, 양돈농가 먼저 준비합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뉴스

▣ '해양배출 운반·처리업도 가축분뇨 처리업
해당'

-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과 면제될 듯
- 양돈협, 해양배출협과 처리업 인정 전방위 노력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요청해온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이, 최근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업도 처리업이라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세청은 가축분뇨 해양배출·운반처리업에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과거 5년간 물량에 대한 부가세도 소급적용해 징수한다는 계획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해양배출업 부과세 과세에 대한 지역 국세청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에서 내린 해양배출업의 처리업 인정 해석으로 부가세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양돈협회가 환경부에 보낸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업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 "오분법 시행규칙 제68조의 축산폐수 처리기준에서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배출업자로서 오분법에 의한 수집·운반업의 허기를 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양배출로 처리하는 경우도 오분법에 의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답변해 왔다. 이와 같이 환경부의 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처리업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만 지어지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오분법에서는 인(人)분뇨 해양배출에 대해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처리업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양배출시 부과세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축산폐수(법률상 용어)의 경우 처리방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의 경우 오분법상 처리업 허가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정한 배출업 등록사업자가 배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어 두 법률간 틈새가 발생하여 세무당국이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양돈협회 제16대 회장단은 지난 2월 22일 해양배출협회(회장 김형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처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고, 환경부에 관련 법률 해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편 양돈협회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부가세 추징금액 영향분석 결과, 과거 5년간 배출량에 대해 소급적용할 경우 그 부가세 금액은 무려 158억에 달하고, 올해에는 220만톤의 가축분뇨가 해양배출 될 경우 부가세 추징금액이 무려 55억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환경부에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이 부가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오분법상의 처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 가축분뇨 자원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침

- 축산자원순환과 자원화 지도지원 계획 마련

농림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고 자문할 '가축분뇨 자원화 전문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 운영키로 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전문위원회는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에 대한 현안사항 및 논의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및 악취시스템 평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자재,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 축산환경 및 자원화 지도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액비를 효율적으로 농지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와 기술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액비유통센터 50개소 대표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중에 액비유통센터 활성화 토론회도 개최키로 했다.

▣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 추진 '순항'

가축분뇨 액비를 활용한 수도작 경진대회가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올해 참여 지역별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순항하고 있다.

또한 올해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 참여 지부인 이천·여주·예산·경주·영광지부 5개 지부 외에도 강원도 철원지부에서도 참여의지를 밝혀, 지난해 이천지부에서 처음 시행한 수도작 경진대회가 자연순환농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나고 있다.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는 향후 가축분뇨 해양배출 단계적 감축 및 중단에 따른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시작, 양돈협회 각 지부 및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농림부 및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도농업기술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되고 있다.

▣ "자연순환농업 성공하려면 지자체 지원 병행 돼야"



지난 2월 23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개최된 제2회 자연순환농업 포럼에서 양돈협회 정종극 부회장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여부가 자연순환농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라는 사실이 자원화의 성공사례를 통해 사실로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부회장은 자연순환농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이천지부의 수도작 경진대회(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 우수한 액비를 앞장 서서 만들고 경종농가의 액비에 대한 오해를 푸는 한편,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산하의 상담센터가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경종농가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상담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했으며, 영광 지역의 분뇨자원화 우수사례를 통해 해당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1월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전년동월 26% 감소

올해 1월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1월 폐기물 해양배출현황에 따르면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총 16만9천125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 22만7천185톤과 견줘 25.6%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폐기물 해양배출량도 1월 한 달 동안 70만 986톤으로 전년동월 79만56톤대비 11.3% 줄은 것으로 집계되어,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배출 분뇨 성분 대폭 강화

- 해수부 내년 2월부터 25개 품목 검사
- 양돈협·크롬 등 특수항목 검사 유예 요청

지난해 2월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8년 2월 22일부터는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가 강화된다. 이에 따르면 해양배출 폐기물은 3개 성상으로 구분되어 처리기준을 1기준과 2기준으로 적용받아, 가축분뇨 등 확산식 폐기물의 경우 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등 25가지 항목을 검사하게 된다.

따라서 해양배출 가축분뇨는 그동안 시료분석 없이 현장점검 후 신고필증을 교부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1기준 검사결과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 시행에 임박하여 성분검사신청 폭주로 기한 내 검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1기준 적용 이전에 성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성분검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키로 하고 폐기물 종류별로 검사기간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검사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은 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연구원, (주)명성과학기술연구원, (주)이화환경, (주)한국이앤씨, (주)혜성환경, (주)원일화학엔환경, (주)램프런티어, (주)청룡환경, (주)산업공해연구소,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북대학교 공동시험실습관 인증센터, FITI시험연구원, 태화환경

(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개 기관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일 해양경찰청에서 개최된 해양배출폐기물 1기준 성분검사 추진을 위한 사전간담회에서, 양돈협회는 "개정된 법에는 폐놀류 구리 아연 등 25가지 항목을 검사토록 하고 있어 드는 비용이 100만원~170만원에 이르러 양돈농가에게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아연 구리 등 가축분뇨에서 검출될 수 있는 품목 3~4개만 검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 자연순환농업 연구사업단 '시동'

- 농진청, 유용희 단장 선임… 본격 사업 착수

자연순환농업 연구사업단이 본격 출범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자연생태계의 물질순환 기능을 활용해 경종과 축산의 조화를 이루고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자연순환농업 연구사업단(단장 유용희)'을 출범,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농촌진흥청은 2006년 4월부터 산하 5개 기관 연구원 32명과 외부전문가 18명이 참여하는 자연순환농업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 1월 공개 공모를 거쳐 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 유용희 과장을 사업단장으로 선정했다.

농진청은 특히 산하 연구기관들과 도농업기술원, 학계 및 농업단체 등 66명의 전문가를 결집해 운영위원회와 가축분뇨자원화분과, 논이용분과, 원예작물분과, 조사료 및 수목분과, 환경영향평가분과, 기술보급분과 등 6개 분과를 구성하고 향후 5년간 총 1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사업단은 기존의 양축농가 위주 가축분뇨처리 연구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가축분뇨 퇴·액비를 논·밭·원예작물 및 수목·잔디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경작물 연계 연구를 집중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배출 '가축분뇨 인계시 종이서식 대신 인터넷·ARS로 대체'

▣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DMS) – ocean Dumping Management System)

폐기물의 발생에서 운반, 해양배출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전자정보의 형태로 관리하는 해양배출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 기존 종이 인계인수서 작성 방식의 문제점

그동안 폐기물 위탁처리시의 종이 폐기물 인계서는 향후 보관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해양배출폐기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서도 그 적법처리 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을 운반처리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언제, 누가 원인제공을 했는지를 판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 이제는 디지털 전자문서로 간단하게

따라서 이러한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투명한 폐기물처리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에서는 지난 '06년 12월에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 : DMS]를 개발 완료하여 '07년 7월 1일 본격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각종 폐기물 민원 신청과 폐기물 인계·인수서 작성은 전화ARS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단한 내용 입력만으로도 빠르게 처리되어 그 처리 결과를 집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으로의 탈바꿈은,

첫째, 신속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폐기물 신규·변경신고 등 각종 폐기물 민원 접수를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전자인계·인수서 작성 시에는 기존업체들의 정보가 DB화 되어있어 3~4개 주요항목만 입력하면 작성이 끝나게 된다.(민원접수부분은 현재 전자정부민원시스템(G4C)와 연동작업 중에 있음)

둘째,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이동상

황을 실시간으로 위탁업체, 운반업체, 해양배출업체 및 관리관청에서 서로 간 교차확인 할 수 있다. 폐기물 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언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바로 알 수 있으며, 멀리 해양에 있는 폐기물운반선의 이동경로까지도 위성을 이용한 자동위치추적시스템(AIS)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의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DMS)과 환경부의 적법처리시스템(WMS)과의 연동으로 각 기관에 중복적으로 제출하던 해양배출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DMS시스템에 1회만 입력하여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 폐기물 전자 인계인수서 작성은 이렇게
폐기물 전자 인계·인수서는 인터넷, 전화ARS로 작성하거나 환경부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에서 작성된 것이 자동으로 제출된다. 먼저 해양경찰서에 DMS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 시스템 사용 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http://dms.kcg.go.kr>)에 접속 사용신청서 작성
- 인천해양경찰서 홈페이지(<http://incheon.kcg.go.kr>) 공지사항 687번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사용신청서 제출(팩스 : 032-881-7531, 인터넷 : 9601051@naver.com, 우편 :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105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

■ 증빙서류 제출 : 신청자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해당 해양경찰서에서 사용자 승인